

강원관광대학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양호교사 2급 및 실기교사자격증 <별표1>의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직과목의 개설)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과목의 개설은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개설한다.

제 3 조 (설치학과) 교직과정 및 과목이 설치된 학과는 <별표2>와 같다.

제 4 조 (이수대상)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는 간호과로 한다.

제 5 조 (이수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직 및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실기교사는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대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 6 조 (위원회) 양호교사 2급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목의 개설 및 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수수료 책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 8 조 (위원회 구성)

1. 위원은 교무처장과 해당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상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검정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 9 조 (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위원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1조(교원자격 검정 신청) 교직과정 및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교무처에 교원자격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

-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 2) 성적증명서 1부
-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학과만 제출) 1부

나. 수수료

제 12 조 (교원자격검정 신청기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은 졸업 당해 학년도에 신청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 후에도 교원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제 13 조 (신청자격의 제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라도의 기본이수영역에 대한 대치이수 과목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졸업일 이전에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교원자격증의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제 14 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2. 교원자격증 원본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성명,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4. 수수료

제 15 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교원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유치원(2)급 정교사 및 실기교사

자 격 종 별	검 정 대 상	발 급 자
실 기 교 사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재학중 예능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학 장
양호교사 2급	1. 전문대학 재학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자 등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교직과 전공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학 장